

품목분류 CASE 1 전기식 비데

판정번호
H337323

물품 정보

용도

- 시트 가열, 세정 및 건조 기능을 갖춘 전기식 비데

구조

-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·시트와 전기식 비데가 일체형으로 결합

쟁점 HS



제 3922 호

플라스틱 재질 위생용품

제 8424 호

액체 분사용·살포용 기기

CBP 판단

- 내부 저장 탱크 없이, 급수 배관을 통해 물 공급
- 분사 장치(노즐)가 고정되어 있어 수동 조작 불필요

개인용 세정기기가 아닌 욕실 설비(비데)에 해당

- 비데 세정 기능은 사용자 선택에 따라 필요시에만 이용
- 시트와 커버는 매 사용 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

구성요소 중 플라스틱 시트와 커버가 필수 요소



미국 HS-CODE 결정

3922.20

변기용 시트와 커버

품목분류 CASE 2 전동식 스쿠터

판정번호
H351832

물품 정보

용도

- 환자, 노인 및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이동 보조 수단

구조

- 백미러·전조등·경적·방향지시 등 장착
- 모델별 최대 시속 4.3 ~ 9.3마일

쟁점 HS



제 8703 호

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

제 8713 호

신체장애인용 차량

CBP 판단

- 쟁점물품은 제8713호의 신체장애인용 차량과 구별됨
 - 제8713호에 분류된 유사 차량과 비교하여 최고 속도가 약 2배에 달함
 - 백미러·경적·방향지시등 등 도로 주행에 필요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
- 개인의 이동 능력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

신체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으로 볼 수 없음



미국 HS-CODE 결정

8703.90
그 밖의 차량

품목분류 CASE 3 유압 실린더

판정번호
N358476

물품 정보

용도

- 농업용 파종기에 장착되는 유압 실린더 및 액추에이터

작동

- 실린더: 유압을 선형 기계력으로 변환하여 고강도 작업 정밀 수행
- 액추에이터: 에너지를 정밀한 기계적 운동으로 변환하여 파종 깊이 등 조절

쟁점 HS



제 8432 호

농업용 기계

제 8412 호

그 밖의 엔진과 모터

CBP 판단

-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해당 호로 우선 분류

제84류 내 특정 호로의 분류 가능 여부 검토

- 제8412호의 유압식 엔진 및 모터에는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를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액압식 실린더와 액압식 서보모터가 분류

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는 제8412호에 우선 분류



미국 HS-CODE 결정

8412.29

그 밖의 엔진과 모터

품목분류
CASE 4 렌즈 조작 모듈

판정번호
N359267

물품 정보

용도

-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파의 수차 보정용 모듈

구조

-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 장비(스캐너)의 일부 구성요소로 부착

쟁점 HS



제 8486 호

반도체 제조용 기기

-20 제조 장비(본품)

-90 장비 부분품

신청인 주장

-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광파의 수차를 보정하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로, 반도체 제조용 기계에 해당

부품이 아닌 반도체 장비가 분류되는 소호 주장

CBP 판단

- 반도체 제조 장비인 스캐너(본품)의 렌즈 장치에서 필수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
- 본품과 독립된 단독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 볼 수 없음

장비가 아닌, 장비의 전용 부분품 소호에 분류

미국 HS-CODE 결정

8486.90

반도체 제조 장비 부분품

품목분류 CASE 5 현수 스트링

판정번호
H358868

물품 정보

용도

- 고전압 전선이 송전탑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매달아 분리하는 현수 스트링

구조

- 품목1: 절연 구성요소 포함 (고무·유리섬유 복합재)
- 품목2·3: 절연 구성요소 미포함

쟁점 HS



제 8546 호

애자(인슐레이터)

제 7326 호

철강제 제품

CBP 판단

- 전선과 철탑 사이의 절연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재질로 이루어진 품목 1은 제8546호의 애자 (전기절연체)에 해당

절연 재질의 현수스트링은 제8546호 (애자)로 분류

- 절연 기능 없이 전선을 지지하는 구조적 기능만 수행하는 품목 2·3은 주된 구성 재질(철강)에 따라 분류

철강 재질의 현수스트링은 철강제품 품목번호로 분류



미국 HS-CODE 결정

품목1 (절연 기능):

8546.90

품목 2·3 (절연 기능 미포함):

7326.90

품목분류
CASE 6 보행기 바퀴 커버

판정번호
N358851

물품 정보

용도

- 보행 보조기(보행기) 바퀴에 장착하는 휠 너트 커버
- 휠 너트의 날카로운 모서리로 인한 가구 등의 손상 방지

재질

- 폴리프로필렌(플라스틱) 재질

쟁점 HS



제 3926 호

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

제 9021 호

정형외과용 기기

CBP 판단

- 쟁점물품 기능(돌출된 너트로 부터 주변 물품 보호) 과 보행기의 기능(보행 시 안정성 제공)은 서로 상이
- 커버는 보행기의 기능 향상에 기여하지 않음

너트 커버를 보행기 전용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

- 커버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품목분류 표 상에서 제3926호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호가 존재하지 않음

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호 분류 결정



미국 HS-CODE 결정

3926.90

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

품목분류
CASE 7 장식용 목재 명판

판정번호
N359164

물품 정보

용도

- 메시지를 기재할 수 있는 목재 명판으로, 합판 스탠드에 세워 장식용으로 사용

구성

- 유성 마커
- 스탠드(받침용)
- 목재 명판

쟁점 HS



제 4420 호

목재로 만든 장식품

제 9608 호

펜과 마커

CBP 판단

- 통칙 제3호 (나)에 따른 '소매용 세트' 해당 여부 검토
 - 유성 마커와 목재 명판·스탠드는 서로 다른 호에 분류
 - 모든 구성품은 메시지를 전시하여 장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함께 조합
 - 별도의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포장

쟁점물품은 소매용 세트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

- 세트의 본질적 특성은 메시지를 작성해서 전시하는 목재 명판에 있음. 따라서 목재 명판을 기준으로 품목분류 판단

미국 HS-CODE 결정

4420.19

목재로 만든 장식품

품목분류
CASE 8 도서 세트

판정번호
N358829

물품 정보

용도

- 8종의 구성품이 종이 박스에 함께 포장된 도서 세트

구성

- 하드커버 도서
- 하드커버 노트
- 소책자
- 카드·봉투
- 스케치 세트
- 돋보기
- 책갈피
- 장식용 상자

CBP 판단

- 통칙 제3호 (나)에 따른 '소매용 세트' 해당 여부 검토
 - 노트(필기용), 소책자·카드(홍보 문구 포함)는 서적의 독서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, 전체 구성품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 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음
 - 쟁점물품은 소매용 세트 요건 3개 중 2개지만 충족
 - 각 구성품 별로 재질 및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품목분류 수행

쟁점물품은 통칙 상의 소매용 세트 요건 미충족



쟁점 HS



제 4901 호

인쇄서적·인쇄물

미국 HS-CODE 결정

도서: 4901.99

노트: 4820.10

책갈피: 7907.00

장식용 상자: 4823.90

- 소책자·카드: 4911.10
- 봉투: 4817.10
- 돋보기: 9013.80
- 스케치: 4911.91

원산지 CASE 1 차량 시동장치

판정번호
N358614

물품 정보

용도

- 차량 엔진을 작동시켜 시동을 거는 전기기계식 장치

제조

- 1. 미국 내 차량에서 중고 시동장치 코어 분리
- 2. 시동장치 코어를 말레이시아로 반출
- 3. 말레이시아에서 성능 복원(재생산)
- 4. 재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재수입

CBP 판단

- 재생산(Remanufacturing)의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
 - 재생산 공정을 거친 후에도 **중고 코어의 성질**(구조, 형태, 재료, 기능)은 **그대로 유지**
 - 재생산 과정에서 결합된 중국산 보조 부품은 원산지를 변경할 정도의 요소로 볼 수 없음

성능 복원을 위한 재생산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. **중고 부품의 원산지 유지**

- 중고 부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→ 미국 내에서 장기간 사용을 거쳐 당초의 원산지 국가와 연관성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미국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음

재생산 절차



- 말레이시아에서 다음의 재생산 절차 수행
- 재생산 과정에서 중국산 보조 부품 추가 장착

- 1 분류 및 확인
- 2 표면 처리 및 세척
- 3 치수 검사 및 선택적 기계 가공
- 4 부품 검증
- 5 조립 및 피팅
- 6 기능 테스트
- 7 보호 처리 및 포장

미국 원산지 결정

중고 코어의 **원산지(미국)**를
제품의 비특혜원산지로 판단

원산지 CASE 2 보조배터리

판정번호
N358901

물품 정보

용도

-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 내장된 휴대용 보조 배터리

구성

-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|
| • 리튬이온 배터리 셀 | 말레이시아 |
| • USB-C 케이블 | 중국산 |
| • USB-C 포트 | 중국산 |
| • 스마트워치 충전기 | 중국산 |
| • LCD 화면 | 중국산 |

제조 공정



-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부품을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

- 1 배터리 셀, 셀 단자, 열수축 튜브 부착
- 2 무선 충전 코일 부착
- 3 배터리 셀과 스마트워치 충전모듈 부착
- 4 USB 충전 케이블 연결, 하우징 압착 밀봉
- 5 외관 검사, 기능 시험

CBP 판단

- 제조 공정이 두 국가 이상에서 수행된 경우,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최종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
- 배터리 셀을 플라스틱 하우징에 조립하는 공정은 배터리 셀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음
- 배터리 셀의 기능은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것으로, 보조 배터리에 탑재된 이후에도 그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

배터리 셀에 하우징 및 부품을 결합하여 배터리 완제품을 제조하더라도, **배터리 셀의 원산지 유지**

미국 원산지 결정

구성요소 중 배터리 셀의 **원산지(말레이시아)**를 완제품의 비특혜원산지로 판단